

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31
----------	------

2020년 09월 15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 외 22명
- 나. 제 안 일 : 2020년 08월 12일
- 다. 회 부 일 : 2020년 08월 21일
- 라. 상 정 일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0년 9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장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과 특별위원회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, 시민들 또한 과거에 비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- 하지만, 아직도 일부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및 폄하 등이 나타나는 등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,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7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

다. 입법예고(2020. 8. 26. ~ 9. 2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(안 제13조의3).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 <p>제7조 (생 략)</p>	<p>제7조(표창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

※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,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,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, '표창장과 상장'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, 소방서장이 수여하며, '감사장'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.

### [표창 분류]

구 분	수여대상	수여 사유
표창장	①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(이하 공무원 등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	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.
	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	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
	③ 개인 및 단체	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.
	④ 순직 공무원	공무수행 중 순직

상장	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	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
		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
감사장	개인 및 단체	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		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
-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, 동 조례에서 규정한 5·18민주화운동, 4·19혁명, 6·10항쟁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각종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데도 긍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화운동”이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·19혁명, 5·18민주화운동, 6·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.

- 다만, 동 개정안에서는 표창의 대상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에 등록된 민주화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, 서울시에 주소를 둔 민주화운동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, 기준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민주화 운동 단체 현황]

등록 구분	단체
서울시	22
서울시교육청	2
중앙부처	63
중앙부처, 서울시 중복 등록	2
합계	89

- 또한, 표창수여 대상자의 전반적 성과,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고, 표창 남발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  
- 한편, 행정국은 관례적·정기적 표창이 아닌 수여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하도록 하는 표창문화 정착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강화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장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최웅식, 김평남, 홍성룡,  
김태호, 김춘례, 이현찬,  
경만선, 정지권, 최정순,  
김혜련, 송정빈, 유 용,  
서운기, 김경영, 성흠제,  
이정인, 오현정, 이승미,  
이영실, 송도호, 채유미,  
김정환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과 특별위원회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, 시민들 또한 과거에 비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하지만, 아직도 일부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및 폄하 등이 나타나는 등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,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표창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7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7조(표창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